

- 일 시 : 2022. 11. 14. (월) 11:00
- 장 소 :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 11월 통장 임시회의 자료



가정2동

『2022년 11월 통장 임시회의 자료 목차』

주요 홍보내용 (15건)	페이지
①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3
②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4
③ 산불예방 안내	5
④ 모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수칙!!	6
⑤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7
⑥ 핵.방사능 피폭대비 행동요령	8
⑦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9
⑧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유의사항 알림	10
⑨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11
⑩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아동학대예방홍보)	12
⑪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안내문	14
⑫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15
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
⑭ 스마트안심지킴이 지원 신청 안내	17
⑮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사업	18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2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22.10.6.~'22.12.30. 동안
전국민(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과 같이 진행됩니다.

주목해주세요!



1.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 '22.10.6.~'22.10.23. 동안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한 세대에 대해서는
'22.10.24.~'22.12.25. 중 유선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다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페이지 내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연결 Q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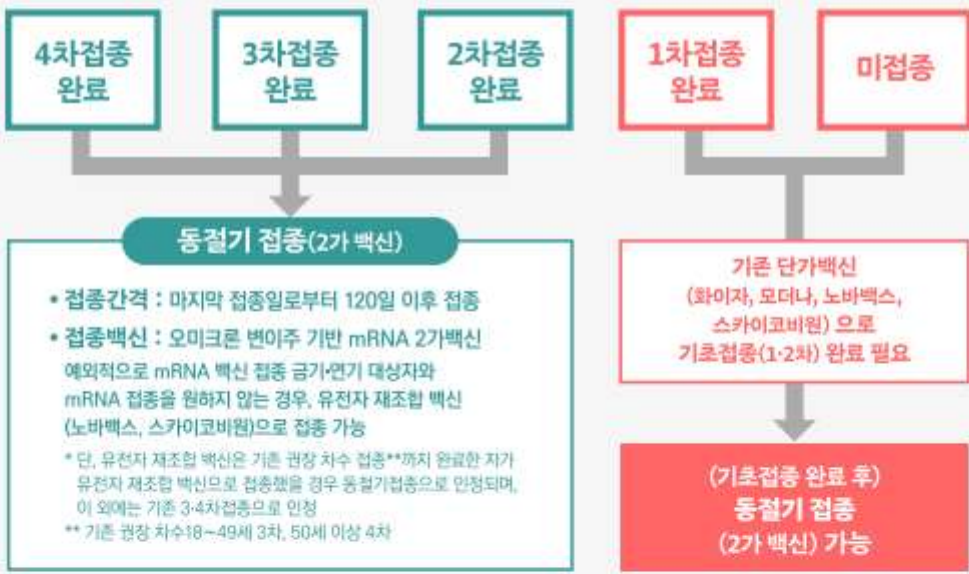
【 부서명 : 총무과 ☎ 560 - 4515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동절기 추가접종에 활용되는 오미크론주 기반 2가백신은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인 1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몇 차까지 완료하셨습니다?



접종예약 및 일정

- 사전예약 : 10월 27일(목)부터 누리집, 콜센터 예약
- 당일접종 : 10월 27일(목)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의료기관 유선 연락

2가백신(기반)	예약접종	당일접종
모더나 BA.1	11.7.(월)~	10.27.(목)~
화이자 BA.1	11.7.(월)~	11.7.(월)~
화이자 BA.4/5	11.14.(월)~	11.14.(월)~

산불예방 안내

산불예방 안내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 ▶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농기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허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관리



-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

※ 산행에 앞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산불로 인한 처벌규정[산지관리법 제53조~제57조]

- 타인소유 산림 방화 : 7년 이상 징역
- 자기소유 산림 방화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과실로 인한 산불발생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신고전화 : 서구청 공원녹지과 ☎ 032-560-4790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모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수칙!!

* 출처: 도로교통공단



알고답시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p>01</p> <p>무면허 운전</p>  <p>(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가능)</p> <p>범칙금 10만원</p>	<p>02</p> <p>승차정원 초과</p>  <p>전동킥보드 및 전동어울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p> <p>범칙금 4만원</p>	<p>03</p>  <p>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휴대전화 사용</p> <p>범칙금 3만원</p>
<p>04</p> <p>보행자 보호 불이행</p>  <p>인명보호장구 미착용</p>  <p>범칙금 2만원</p>	<p>05</p> <p>지정차로 통행위반</p>  <p>등화점등 불이행 발광장치 미착용</p>  <p>범칙금 1만원</p>	<p>06</p>  <p>음주운전</p> <p>범칙금 10만원</p> <p>음주측정불응</p>  <p>범칙금 13만원</p>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 출처: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

음주운전 NO!! 안전운전 YES!!

제 이름은, 똑바로 읽으면 '음주운전',
거꾸로 읽으면 '전원죽음' 입니다.
(맥주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 출처 및 참조: 한국교통안전공단 블로그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잔만 마셔도 운전 금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처벌
0.03%~0.08% 미만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0.08%~0.2% 미만	면허취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1천만 원 이하
0.2% 이상	면허취소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음주운전 적발 2회이상	면허취소 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측정불응	면허취소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

※출처: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 개정 도로교통법 :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위반 횟수) 1회 : 12시간, 2회 : 16시간, 3회 : 48시간

- 교통사고 없는 교통안전도시 안전 서구를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
함께 만들어 갑시다.

【 부서명 : 교통정책과 ☎ 560 - 4853 】

핵·방사능 피폭대비 행동요령



핵·방사능 피폭대비 행동요령



지하시설로 대피

핵·방사능
피폭 전



핵공격 전에는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합니다.

- 지하철역, 지하상가, 건물지하 등의 대피시설로 이동합니다.
-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방화, 피난시설, 도랑 등의 주변 시설을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 대피시에는 생활필수품, 화생방 개인보호장비, 비상대비물자 등을 준비하고, 정부 안내방송을 계속 청취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제염

핵·방사능
피폭 중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오염을 제거하여 피폭을 줄여야 합니다.

먼저 걸옷을 벗고,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합니다. 그런 후 가능하다면 따뜻한 물과 비누를 이용해 샤워합니다. 샤워를 할 수 없는 경우, 젖은 수건이나 깨끗한 천으로 피부를 닦습니다. 샤워 후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피해 최소화하기

핵·방사능
피폭 후



1. 방사능 노출 최소화

방사선에 대한 신체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오염장소에서 머무름, 인체 노출 시간이 적을수록 안전하고, 납·콘크리트 벽 등으로 건축된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2. 낙진 피해 최소화

낙진을 최대한 피합니다.

정부 안내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낙진 지역에서 대피하고 여유가 없다면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대피하되, 비닐 옷이나 우산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 생애 1회,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

○ (지원 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 가구 60% 이하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전입신고 必)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표 (월/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중위소득 60%	1,166,887원	1,956,051원	2,516,821원	3,072,648원	3,614,709원

※ 소득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사업 소득)

○ (신청 기간) 2022.08.22. ~ 2023.08.21.

○ (신청 방법)

- 만19세~34세 : 온라인(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만35세~39세 : 오프라인(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기간) 2022.11 ~ 2024.12 (신청순)

【 부서명 : 공동체협치과 ☎ 560 - 0888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유의사항 알림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시
해당 사업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 요건
 -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 미만(공공성 요건 충족 또는 관리지역 내 사업 추진 시 2만 ㎡까지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관리지역 내에서는 완화 가능)
 -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 공동 혼합 포함) 이상

☑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 요건
 -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 사업추진 절차



☑ 유의사항

- ◆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및 조합원 분담금 변경 발생
 -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허위 및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추정부담금은 단순 추정치로 분양가, 종전자산가치 평가, 건축 규모 등의 변경, 사업기간, 각종 계약체결에 따라서 변동되어 **분담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후 철회
 -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호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무자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 시 주민피해 우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된 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의 대행 등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으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자격 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함으로써 사업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피해는 주민(조합원)이 받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확인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https://renewal.incheon.go.kr/ires/index.d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제공
 - 사업의 주체가 토지등소유자(조합)이며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자료를 인천도시공사(☎032-260-5326)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토지등소유자 50% 동의 시 신청 가능)

【 부서명 : 도시재생과 ☎ 560 - 4591~5 】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23, 3126)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우리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배포일: '21. 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복지 위기가구'란?

-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 ✔ 학대 위기 아동
-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지원내용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복지상담, 건강관리, 돌봄,
후원, 통합사례관리 등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아동학대에방홍보)

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구요?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국번 없이 **112**

인천광역시 아동권리보장원
Incheon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인천광역시 아동권리보장원
Incheon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학대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인천광역시 아동권리보장원
Incheon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학대 관련 용어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인천광역시 아동권리보장원
Incheon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중복학대’란?
두 가지 이상 학대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래 의심 징후에 1개라도 해당된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가출, 자살 시도
- 건강상태 불량
- жат은 결석
- 늦은 귀가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 이외 아동학대 의심징후는 '아이지킴 앱'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 초·중·고 종사자
-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 의료기관 종사자(의료인, 의료기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5호에 해당하는 자

아동학대 신고방법

- 아동학대 의심 상황
- 신고자 정보(이름, 연락처) *익명신고 가능
- 아동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교육기관 등)
- 아동의 현재 상황(안전여부)
- 학대행위의심자 인적사항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등)

아동 및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신고 가능

아동학대 신고방법

국번없이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아동학대 모바일 앱 아이지킴을 신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아이마음 아이다움 캠페인 : <https://www.imaum-idaum.com/>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32) 718-3753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32) 718-3752

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안내문

『SOS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행방불명,질병,부상,가정폭력 등 9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지원기준이 충족하는 자

□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 재지원 → 6개월 이내 동일사유 지원불가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4,81	3,260,08	4,194,70
선정기준 (중위소득 85%)	1,653,09	2,771,07	3,565,49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5,121,08	6,024,51	6,907,00
선정기준 (중위소득 85%)	4,352,91	5,120,83	5,870,95

□ 지원내용

- (주지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 (부지원) 교육비,연료비,해산·장제비,전기요금
- ※ 부지원은 주지원 대상자에 대해 추가지원

□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1,944,81	3,260,08	4,194,70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972,406	1,630,04	2,097,35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22년)	5,121,08	6,024,51	6,907,00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2,560,54	3,012,25	3,453,50

-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5인가구	6인가구
		903,678	1,036,051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032) 718-3752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서비스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각1회/90분) 포함 3개월(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제공인력 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자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당) 서비스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 = 본인부담금 6,000원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회당) 서비스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 = 본인부담금 7,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이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가족부 | 평등을 일상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 9~24세(1998년~ 2013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 최대 150,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 월 지급액 : (1~6월) 12,000원, (7~12월) 13,000원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www.bokjiro.go.kr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배우 / 김아중

'이 포스터는 배우 김아중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

스마트안심지킴이 지원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2. 10. 28.(금)까지
- 신청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중 지적 또는 자폐
 - 인천시 서구에 실제 거주해야 함
- 추천대상 : 가정2동 3명
- 지원방법 : ■ 10.31.(월) 선정자 명단 등 통보
 - 11.01.(화)~소진시까지
기기 사용법 안내 및 동의서, 인수증 작성 후
안심지킴이 기기 배부
- 지원기기 : 스마트안심지킴이 2인솔 HPS 배회감지기

구 분	'22년 지원기기 (스마트지킴이2)	비고
Network	Cat.M1/GPS/HPS(Wi-Fi, Cell)	
Battery	300mAh(min. 48h)	
Sensor	BLE/PPG/Gyro/기압/가속	
방수/방진	IP68	
기능	- 실내측위 가능 추가 - 건강정보 제공(안전+돌봄 기능 추가) (심박, 산소포화도, 낙상, 탈착 외) - 양방향 통신(문자, 호출 가능) - 인솔 + 손목밴드(2종) 교체형 - 인솔(깔창): 두께 2cm/ 무게 40g / 사이즈 조정 가능	- 꼬까신과 비교 : 인솔 단일 방식 / 무게 40g이상 / 두께 2cm / 사이즈 조정 불가
사진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사업

□ 사업개요



<안심지킴이집 현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신변을 위협하는 긴급 위기상황 발생 시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으로 대피하여 도움을 요청 비상벨을 통하여 경찰청 112 핫라인으로 신고, 경찰이 출동하여 함께 귀가함으로써 구민과 편의점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각종 폭력 예방 환경 조성

○ 이용방법 : 안심지킴이집 현판(편의점의 출입문이나 입구 주변 유리에 부착되어 있음) 설치된 편의점으로 대피 후 경찰에 신고 요청

○ 흐름도



【 부서명 : 가정보육과 ☎ 560 - 5737 】